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석 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
설물의 종류에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을 추가하
려는 것입니다.

“가로영상시설”은 서울시의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사업」에 따른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¹⁾ 시비와 구비
를 합쳐 총 68억 8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입니다.

1)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 제안서 공모계획(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방침 제8호, 2007.8.2.)

이 시설물은 설치 당시 강남구 조례상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2년 9월 28일 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서울시 고시로 기존의 합법적 시설물에 대해 5년동안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로영상시설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이고,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안내도, 교통정보안내판, 시계탑, 조명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과 서울시 사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